

老人福祉의 概念과 原則에 관한 考察

韓 昌 榮*

— 目 次 —	
I. 序 論	Ⅲ. 老人福祉의 原則
Ⅱ. 老人福祉의 概念	1. 老人에 의한(by) 原則
1. 老人福祉의 概念	2. 老人을 위한(for) 原則
2. 老人福祉의 概念에 관한 周邊的 接近	3. 諸原則의 相互關係
3. 老人福祉의 機能	Ⅳ. 結 論

I. 序 論

老人福祉라는 말이 십여년전만해도 귀에 생소한 말인것처럼 들리곤 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老人福祉라는用語는 이제 설익은 단어가 아니라, 아주 낯익은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老人福祉라는 말이 회자되어지는 裏面에는, 그만큼 老人問題가 深刻化되어가고 있는 동시에, 老人問題에 대한 關心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老人福祉”란 무엇이냐라는 점에 이르러서는 여러가지로 見解가 다른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 論文에서는 “老人福祉”의 概念을 정리하여 보며 나아가서 老人福祉와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原則 또는 原理를 천착하여 보고자 한다.

老人福祉의 概念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於間에 발표되어진 여러가지 見解들을 일단 정리하여 보는 동시에 老人福祉라는 概念을, 보다더 잘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는, 老人福祉의 概念에 관한 周邊的 接近(peripheral approach)도 아울러 試圖하여 본다. 그리고 老人福祉와 聯關性이 있는 原則 또는 原理를 천착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老人에 의한(by the aged) 原則과 老人을 위한(for the aged) 原則을 攻究하고자 한다.

* 法政大學 行政學科

II. 老人福祉의 概念

사실, 老人問題가 深刻化되어가면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資料들이 簇出하고 있거니와, 그런 자료들 중에 “老人福祉”라는 概念을 把持하는 자료는 意外로 드문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왜 老人問題를 다루고 있는 자료중에 “老人福祉”라는 概念을 把持하는 자료가 드문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본시 老人問題가 西歐社會에서 먼저 惹起되었기 까닭에 그렇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思惟形式에 있어서 이른바 演繹法(deduction)을 취하는게 아니라 歸納法(induction)을 援用하기 때문에, 어떤 概念(concept) 또는 定義(definition)를 前提하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 事例들(cases)을 重視하게 된다. 따라서 歸納法의 視角에서 “老人福祉”를 云論하려려는 老人福祉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들을 枚擧하게 된다. 반면에, 演繹法의 視角에서는 우선, 大前提로서 “老人福祉”의 概念을 規定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문제에 관한 자료중에는, 演繹法의 觀點에서 “老人福祉”를 파악하는 자료가 흔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演繹法의 觀點에서 다루지고 있는 “老人福祉”라는 概念들은 먼저 정리하여 보고, 연이어서, 老人福祉라는 概念에 관한 周邊的 接近을 찾아보며, 끝으로 “老人福祉”의 機能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老人福祉의 概念

老人福祉의 概念에 관한 여러 가지 見解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주로 日本의 자료 및 우리나라의 자료를 土臺로 하여, 발표되어진 年代順으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老人福祉의 概念에 관한 諸見解

1) 岡村重夫의 見解

岡村重夫에 의하면, “老人福祉란, 社會福祉의 一分野이므로, 老人福祉라 함은 老齡에 의하여 야기되는 社會生活上의 困難에 對한 社會福祉의 援助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¹⁾

2) 金聖順의 見解

金聖順에 의하면, “社會福祉가 널리 인간의 福祉(well-being)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老人福祉는 많은 사회문제중 특히 老人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를 이

1) 岡村重夫·三浦文夫, 「講座 日本の老人 2·老人の福祉と社會保障」, 東京, 垣内出版株式會社, 1977, p. 62; 韓昌榮, “韓國老人福祉의 行政과 法制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1979, p. 145.

특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²⁾

3) 金桂三의 見解

金桂三에 의하면, 老人福祉의 概念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金桂三은 大間知千代の 見解를 援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廣義의 老人福祉는 全老人의 生活上의 安定, 醫療, 職業의 保障, 住宅, 教育, recreation, 그 外의 社會的 政策의 全體를 의미하는 것으로, 北歐, 특히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社會通念으로 되고 있으며, 狹義의 老人福祉는 老齡退職, 失業, 貧困, 病弱, 配偶者와 家族의 死別, 愛情의 상실 등의 諸要因으로 부터 발생하는 生活困窮, 孤獨과 慾求不滿, 有用感이나 삶의 보람 상실을 한 老人을 대상으로 個別的으로 公的扶助나 生活指導, 心身의 養護나 自立助長 등과 같은 구체적 인 保護, 育成, 更生을 위한 事業을 行하고 個個人의 老人이 人間으로서 생활하는 기쁨을 가지며 長壽를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社會的으로 組織된 서비스라고 한다.³⁾

4) 「老人福祉便覽」의 見解

「老人福祉便覽」에 의하면, 老人福祉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사회의 노력이다. 이것은 구빈사업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생활을 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하는 예방적, 개발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또 비생산적인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해 주고 충분한 전문 서비스의 제공과 제도적 보장을 확립하여 보람있는 생활을 실현케 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는 노년기에 맞이하게 되는 생활 변화에 대처하여 이를 예측하고 질병, 빈곤, 고독, 무위(無爲) 등 생활상의 곤란을 배제하고 노인 스스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해지는 현실적인 보호와 미래적인 예방을 위한 서비스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⁴⁾

5) 張仁協·崔聖載의 見解

張仁協·崔聖載에 의하면, 老人福祉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老人福祉(the aged welfare)는 한마디로 노인이 부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公的 및 私的 차원에서의 조직적 재반활동"이라 할 수 있다.⁵⁾

6) 愼燮重의 見解

愼燮重에 의하면, 老人福祉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金聖順, 「老人福祉論」, 서울, 二友出版社, 1981, p. 63.

3) 金桂三, 「韓國의 老人福祉制度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釜山大學校 大學院, 1982, pp. 42~43.

4) 鄭周永, 「老人福祉便覽」, 서울,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5, p. 482.

5) 張仁協·崔聖載, 「老人福祉學」,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p. 266.

老人福祉란 老人의 生活上의 困難에 대하여 經濟生活上의 安定, 心身の 健康維持, 社會的 參加와 役割의 遂行, 그리고 就業의 機會와 여가의 享受 등에 걸쳐 政策 및 制度와 福祉 서비스를 통하여, 老人이 하나의 獨立된 人間으로서의 基本的 慾求와 文化的 生活를 維持할 수 있도록 援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

7) 黃振洙의 見解

黃振洙에 의하면, 老人福祉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일분야이므로 노인복지라 함은 노령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생활상의 곤란에 대한 사회복지적 원조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사회보장이나 직업안정, 의료, 위생, 주택정책 등과 아울러 사회생활상의 곤란을 타개하는 제도이지만 그 생활상의 곤란에 대한 타개의 접근방법이나 원조상태에 있어서 명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⁷⁾

나. 老人福祉의 概念에 관한 綜合的 考察

위에서, 老人福祉의 概念에 관한 여러 가지 見解들을, 발표되어진 年代順으로 정리하여 봤거니와, 그들 見解들을 규찰하여 볼 때, 老人福祉의 概念이 지니고 있는 內包(connotation)들이, 年代가 경과하여감에 따라서, 多樣性과 外延性을 띠고 있는 경향이 엿보인다.

즉, 최근에 발표되어진 黃振洙의 見解를 除外하고서는, 최근에 오면 올수록, 이른바 廣義의 老人福祉概念化 되어가는 성향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물론, 老人福祉의 概念을 廣義의 것과 狹義의 것으로 兩分하는 二分法(dichotomy)에 대한 批判도 없지 않으나,⁸⁾ 주지하는 바와 같이, 老人福祉의 概念을 發展過程上의 視角에서 본다면, 이른바 狹義의 老人福祉概念이 擡頭되었던 것을 否認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0年代에는 狹義의 老人福祉概念이 主流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80年代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廣義의 老人福祉概念이 발달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金桂三의 見解, 「老人福祉便覽」의 見解, 張仁協·崔聖載의 見解, 그리고 愼雙重의 見解 등이, 이른바 廣義의 老人福祉概念으로 志向하는 性向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老人福祉는 個個人的 老人의 困難性을 해결하는 次元을 止揚(aufheben)하여 全體로서의 老人의 困難性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老年學의 接近方法 自體에 관한 批判도 없지 않다. 즉, 從來의 老年學이 너무나 微視的 接近方法(microscopic approach)을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巨視的 接近方法(macroscopic approach)을 活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⁹⁾ 이런 脈絡에서도, 老人福祉概念을 概念規定化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廣義의 概念으로 老人福祉概念을 把持할 필요가 있게 된다.

6) 愼雙重, 「韓·日老人福祉政策의 比較研究」, 「社會科學論叢」第7卷 第1號(通卷 第12號), 釜山大學校 社會科學大學, 1988年 6月, p. 102.

7) 黃振洙, 「現代福祉行政論」, 서울, 부루칸모로, 1990, p. 318.

8) 愼雙重, 前揭論文, p. 101.

9) 森 幹郎, 「政策老年學」, 東京, 垣內出版株式會社, 1981, p. 6.

요컨대, 事物을 概念規定化하는 데 있어서 몇가지 着眼點이 있게 된다. 첫째로는 그 事物을 行動化시키는 主體에 관한 것이고 둘째로는, 事物이 指稱되어지는 범위 또는 外延에 관한 일이며, 셋째로, 事物을 靜態的(static)으로 把持하느냐 또는 動態的(dynamic)으로 把持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準據基準(frame of reference)에 따라서, 위에서 소개되어진 여러가지 見解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둘째의 外延의 문제는 여러 가지 최근의 見解들이 廣義의 老人福祉概念으로 발전하고 있기 까닭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첫번째의 主體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見解中, 張仁協·崔聖載의 見解에서 “公的 및 私的 차원에서의…”라는 言表가 말해 주듯이, 公的인 것과 私的인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무릇, 老人福祉라면, 그 史的 過程上, 公的 扶助面이 강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視角에서는, 웅당 老人福祉概念을 公的 概念으로 把持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老人福祉의 私的 局面을 看過할 수 있는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張仁協·崔聖載의 見解中, “公的 및 私的 차원에서의…”라는 言表는 卓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세번째의 把握方法中, 필자는 靜態의 方法보다도 動態의 方法을 택하는 바, 事物의 概念規定化에 있어서 動態의 方法을 취하게 되면, 事物을, 事物 그 自體(An sich)로서가 아니라, 過程(process)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런 脈絡에서, 張仁協·崔聖載의 見解中, “…조직적 制限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制限활동”을 靜態的인 것으로 보느냐 또는 動態的인 것으로 보느냐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필자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雲散霧消格으로 없애는 方案으로 “過程”이라는 動態的 用語를 추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 나름대로의 老人福祉에 관한 概念은 다음과 같다.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公的 및 私的 차원에서의 조직적 制限활동과정.

2. 老人福祉의 概念에 관한 周邊의 接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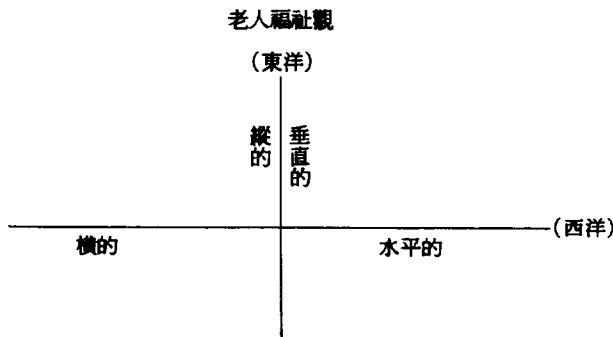
위에서 老人福祉概念의 概念에 관하여 천착하여 왔거니와, 老人福祉라는 概念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老人福祉의 概念과 聯關性이 있는 見解들이 있는 것이다. 즉, 老人福祉의 概念에 관한 周邊의 接近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周邊의 接近도 老人福祉라는 概念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點을 想到할 때, 그러한 接近들을 看過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周邊의 接近들을 정리하여 보고자 하는 바, 그 내용으론, 老人福祉觀의 東西比較, 老人福祉의 理念, 老人福祉의 目的, 새로운 老人福祉, 그리고 老人福祉의 現代의 要請 등이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老人福祉觀의 東西比較

東洋과 西洋의 弱者對策을 고찰하여 본다면, 東洋의 경우, 一般庶民의 쪽에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勢力이 있었으므로, 힘이 弱한 支配勢力을 補強하기 위한 庶民道徳이 발생하였고, 힘이 弱한 老人에 對해서도, 힘이 強한 젊은이는 孝行하는 것이 當然하다는 指針을 수립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西歐에서는, 支配勢力의 倣이 偉大하고, 庶民의 힘은 극히 弱하였기 까닭에, 그 庶民의 勢力을 補強하기 위한 支配者道徳이 발달하였던 것이다. 다만, 老人은, 東洋처럼 孝行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같은 人間으로서, 弱한 立場에 처해지면, 다함께 더불어 돕는다는 並列的 道徳이 발달하였던 것이다.¹⁰⁾ 東洋의 庶民道徳이 縱的·垂直的(vertical) 道徳이라 한다면, 西洋의 支配者道徳은 橫的·水平的(horizontal) 道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을 老人福祉에 投影照準시켜 볼 때, 東洋의 老人福祉觀은 다분히 縱的·垂直的인 性格을 지녀왔으며, 西洋의 老人福祉觀은, 橫的·水平的인 性格을 지녀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論擧를 圖式化시켜 보면, <表 I>과 같다.

<表 I> 東西洋의 老人福祉觀 比較



나. 老人福祉의 理念

崔順男은 老人福祉의 理念을 云論하는데, 첫째로, 福祉意識의 대두문제를 다루고, 둘째로,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思想의 대두문제를 다루고 있다.¹¹⁾ 다음에, 崔順男의 要旨를 정리하고자 한다.

1) 福祉意識

福祉意識은 다음 두가지 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産業革命의 結果로 나타난 社會的 不平等이 매우 심하여 이의 해결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西歐國家에 있어서 平等思想, 議會政治의 발달, 산업화와 勞動組合運動의 발달 등으로

10) 宇治谷義雄, 「老人福祉入門」, 東京, 川島書店, 1978, p. 82.

11) 崔順男, 「現代社會와 老人福祉」, 서울, 弘益齋, 1989(제판), pp. 246~249.

국가에 대하여 社會保障을 실시할 것을 각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데서 이 제도에 대한 國家의 歸實思想이 제기된 것이다.

2)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思想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는 生存權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生存權은 社會的 敗殘者에게 주는 국가의 은혜로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享有하는 者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權利性이며,

둘째로, 生存權은 單只 생명을 유지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思想은, 우리나라 憲法에도 규정되어 있다.

憲法 제10조 제1문 전단은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라고 하여, 人間이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人間의 尊嚴性尊重條項은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人間의 尊嚴性尊重의 原理는 道德的 차원에서는 倫理的 價値를 의미하는 것이고, 法的 차원에서는 前國家的·超國家的 自然法原理를 의미하는 것이다.¹²⁾

한편, 老人福祉法 第2條는 同法의 基本理念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第2條(基本理念) ① 老人은 後孫의 養育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者로서 尊敬받으며, 건전하고 安全된 生活를 보장받는다.

② 老人은 그 能力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社會的 活動에 參與할 機會를 보장받는다.

③ 老人은 老齡에 따르는 心身의 變化를 自覺하여 항상 心身의 健康을 유지하고, 그 知識과 經驗을 活用하여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의 條文中, 특히 제3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批判되어지고 있거니와,¹³⁾ 장차 老人福祉法의 改正過程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¹⁴⁾ 왜냐하면, 同法의 基本理念을 천명하는 條文에 老人의 義務條項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2) 權亨星, 「新稿 憲法學概論」, 서울, 法文社, 1989, p.232; 玄敬大, 「新憲法」, 서울, 博文閣, 1988, p.172.

13) 현의성,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老人生活」 第66號, 社團法人 大韓老人會, 1988年 9·10月號, pp.68~69.

14) 韓昌榮, 「老人福祉法의 制定과 改正에 관한 考察」, 「論文集」 第30輯, 계주대학교, 1990, p.255.

다. 老人福祉의 目的

老人福祉事業의 對象은 처음에는 扶養者가 없고 勞動力을 상실한 老齡者였으며, 그것은 收容保護의 處遇로써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른바 「養老事業」으로서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반드시 生活困窮者에 한정하지 않고 또는 老人의 福祉를 생각하여 모든 사람들의 老後生活의 安定을 保障하고자 하는 것이 그 目的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老人의 生活安定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老人生活에 있어서의 孤獨感의 除去 등 보다 社會的인 生活을 營爲할 수 있게 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¹⁵⁾

1981년 6월 5일에 制定되어진 老人福祉法도 위와 같은 老人福祉의 目的을 구현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規定이 있었거니와, 1989년 12월 30일에 同法이 大幅的으로 改正되어, 보다더 老人福祉의 目的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同法 第13條는 老齡手當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는데, 同法 第13條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3條(老齡手當)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65歲 이상의 者에 대하여 老齡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老齡手當을 支給할 時期 및 對象者의 選定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위의 規定은, 우리 나라 老人福祉史上, 문자 그대로 劃期的인 規定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을 具體化(implementation)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아무튼 老人福祉法에 따른 老齡手當이 1991년부터 전국의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만1천명에게 월 1만원씩 지급된다.¹⁶⁾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은 「노령手當」은 생색뿐인 선심이라는 批判도 없지 않다.¹⁷⁾ 요컨대, 「老齡手當」이 처음으로 지급되어진다는 점에서는 크나큰 意義를 찾아볼 수 있으나, 對象者의 選定이나 支給額에 관하여서는 보다 과감한 改善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¹⁸⁾

라. 새로운 老人福祉

岡村重夫는 새로운 老人福祉를 강조하면서, 그 새로운 老人福祉는 세 가지 原理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 그의 論旨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5) 李啓卓, 「福祉行政論」, 서울: 고려원, 1983, p.263. ; 障履奉仕會福祉館, 「2000年代를 向한 韓國 社會福祉總覽」, 서울, 사회단체 장애자고용봉사회, 1990, p.1075.

16) 동아일보, 1990. 12. 20. <13>, 70세 이상 저소득노인 내년부터 月萬원지급.

17) 중앙일보, 1990. 12. 20. <3>, 「노령手當」 생색뿐인 선심.

18) 朴在侃, 「老齡手當支給制度 實施方案」, 大韓老人會, 「老齡手當支給制度 實施方案에 관한 公聽會 結果報告書」, 1990, 참조.

19) 岡村重夫, 「新しい老人福祉」,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81, pp.7~12.

“새로운 老人福祉”의 第一原理은, 「人間의 尊嚴性의 原理」라 할 수 있다. 즉, 老人의 處遇는 人間의 尊嚴性尊重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老齡期는 喪失의 時期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時期에 있어서도 오히려 喪失하지 아니하는 自己를 發見하는 기쁨은, 老人에게 허용된 特權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老人福祉”의 第二原理은, 「老人의 自由選擇과 生活保障의 原理」라 할 수 있다. 老人이 多様な 老人觀을 自由로 選擇하게 하는 條件을 社會나 國家가 整備하고 援助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老人의 自由로운 選擇을 援助하는 方法으로는, 한번으로 社會保障, 職業訓練, 雇傭政策, 社會教育施設 등의 集團的인 一般施策이나 特別施策의 提供과 동시에, 이들의 資源을 利用하면서 自由롭게 特定の 老人觀과 그것에 基因하는 行動을 選擇하게 하는 個別化的 相談이나 情報提供 등의 케이스·서비스로 이뤄진다. 그 結果 老人은, 內面的인 精神世界를 보다더 深化시키는 行動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老人의 深化된 內面的 喜悅로 지탱되어진 社會的 活動을 選擇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老人福祉”의 第三原理은, 「連帶의 責任性의 原理」라고 할 수 있다. 多方面에 걸쳐진 社會的 서비스의 提供을 나라, 公共團體, 企業(勞動組合을 포함한다), 家族, 地域社會 및 個人的 連帶責任으로서 明確化하는 것이다. 또한 岡村重夫는 이렇게 주장한다. 즉, 現行의 日本老人福祉法은, 나라 및 地方公共團體의 行政責任을 規定하고 있지만, 이로부터의 高齡化社會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 各種의 機關, 團體, 家族, 個人的 連帶와 동시에 適切な 責任分擔의 實行, 나아가서 老人의 生活實態의 變化에 對應하여, 社會的 施策을 改善하는 責任도 明確하게 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위와 같은 岡村重夫의 日本老人福祉法에 대한 批判은, 우리 나라의 老人福祉法을 前向的으로 改正하는 作業過程上,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老人政策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深度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老人福祉의 現代的 要請

老人福祉의 現代的 要請으로서, 우리들이 自覺하고 反省하여야 할 것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²⁰⁾ 橋 覺勝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列舉한다.

1. 民衆性 2. 權利性 3. 科學性

그의 論旨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第1의 民衆性이라고 하는 것은, 現在는 老人도 一般民衆의 年齡的 一階層으로서, 모든 老人에 대하여, 그의 生活의 福祉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찌

20) 橋 覺勝, 「老年學」, 東京, 誠信書房, 1976(第4刷), pp. 314~316.

〈表Ⅱ〉老人福祉 서비스 體系

老人의 基本的 要求	一般的 老人施策	老 人
		豫防機能에 關聯하는 서비스
經 濟 的 安 定	老 齡 年 金	補助年金서비스(高齡, 病弱加算) 年金者 生活相談, 融資·交付金, 年金者 그루우프活動, 退職前 相談
職 業 的 安 定	中高年齡者의 職業安定施策	停年制度改善, 退職者再履傭訓練, 再履傭 斡旋, 産業福祉(退職者 相 談, 停年延長 措置, 停年前 社內訓 練), 訓練手當
醫療, 衛生, 營養의 保障	醫 療 保 障 公 衆 衛 生	老人健康 診察, 健康相談, 保健센 터, 公費負擔 醫療(入院, 通院, 檢 查), 營養指導, 老人食堂, 老人給 食, 保健클럽, 老人 MSW, PSW에 의한 豫防活動, 短期看護 援助(訪 問看護補裝具)
家族의 安定 (住宅日常生活保障)	家族近代化施策 家族法 非營利的住宅政策	家族케이스·워크, 家族生活相談 家政 指導 (個別그루우프), 獨居, 病弱老人訪問活動과 家政援助, 住 宅貸付金, 住宅手當, 住宅相談, 老 人住宅計劃, 住宅改修資金貸付
社 會 的 協 同 의 機 會	職 域 · 地 域 團 體 參 加	老人地域活動, 職域活動, 老人相互 扶助組織 (老人클럽 等), 老人클럽 워크施設
教 育 의 機 會	社 會 教 育 施 策	大學開放(老人教養클럽), 老人圖書 館, 老人教育相談
文 化 , 娛 樂 의 機 會	非營利的 레크리에이션 施策	老人레크리에이션·클럽의 指導, 老人스포츠·센터, 旅行會, 巡迴 文庫, 老人의 날, 호비·쇼우

福 祉 의 機 能		
保護의 機能에 關聯하는 서어비스	開發의 機能에 關聯하는 서어비스	調整의 機能에 關聯하는 서어비스
公的扶助, 生活相談, 減免稅, 高齡者, 病弱老人加算 退職一時金, 融資事業 其他의 貸付金, 老人 手當	老齡年金 增額運動, 低所得老人對策推進運動	各種年金制度調整에 대한 參加, 低所得 老人對策協議會參加
高齡者職業轉換 老人授產事業, 家庭內職轉換	停年制延長運動, 老人退職에 對한 研究, 老齡者職業 및 家事訓練에 의한 能力開發, 人事·social worker의 養成, 配置	老人職業問題 連絡會議 參加, 停年制度 改善 連絡會議參加
病弱老人 호음, 精神病原, 中間施設(night or day hospital), 其他施設收容, 長期訪問 看護 夜間不寐, 家政援助, 醫療費減免, 特別給食(病人食), 看護手當, 保養호음, 寢具, 器具 提供	特養호음 其他 病弱老人對策 改善運動, 老人醫療 制度改善運動 壯年者 保健 指導, rehabilitation 技術과 施設의 普及·進歩에 의한 老人 處遇의 改善	老人醫療 連絡會議參加, 老人看護 連絡會議參加, home helper 會議參加, MSW, PSW에 의한 施設內 및 地域活動
家族케이스, 워어코, 家政援助, 訪問看護, 家賃補助 住宅改修費補助, 家政指導, 老人給食, 電話서어비스 車의자, 輕費老人 호음 其他 老人共同住宅에로의 收容, 通園 rehabilitation 施設, 短期 rehabilitation 施設 老人돌보기, 技術指導 相談, 特殊生活 器具의 提供	老人住宅 設備의 研究, 開發, 老人住宅, 輕費호음建設 運動, 老人돌보기 技術의 改善·開發, 病弱老人 日常生活 器具의 開發, 老人住宅 管理者의 養成·訓練	home helper連絡會 議參加 social worker 保健婦, helper 連絡會議, 家族 social work 機關에 의한 케이스 會議
老人友情訪問, 特殊老人클럽活動, 病弱, 獨居老人의 社交클럽 및 그루우프·워어크, 施設老人의 그루우프·워어크	老人問題의 調查, P.R. 및 立法活動, 自主的 老人클럽 結成, 老人 Volunteer活動, 地域 老人클럽 改善運動	老人問題國民會議, 地域老人클럽(改善) 連絡 會議
地域老人大學(學習클라스) 巡迴圖書館, 巡迴教室, 收容施設에 있어서의 學習 援助	各學校, 社會教育에 있어서의 老人問題의 教育 및 實習	老人問題 教育 連絡會議
老人클럽經費補助·免除, Radio·TV料金免除, 旅行割引制度, 收容施設老人 레크리에이션 指導, 在宅 病弱老人의 레크리에이션 指導	老人·成人 餘暇活動의 研究와 指導, 레크리에이션에 의한 rehabilitation 效果의 利用과 開發	老人레크리에이션 關係者 連絡會議

기 特殊한 階層의 老人에 대한 慈善的 行爲로써, 社會의 福祉施策이 배려되었을 뿐이며, 또한 快樂慰安行爲로써 一部の 階層에서만 獨占的으로 행하여졌을 뿐이다. 그러나 民主社會에 있어서는 老人이라면 누구든지 享有할 수 있는 福祉行政과 施策이 아니면 안되는 동시에, 老人의 쪽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責任下에 自主的으로 生活을 開發하는 데 努力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에 있어서는, 단지 恩惠的 施與가 아니라, 權利로써 主張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이, 第2의 權利性의 문제이다.

또한, 老人福祉가 모든 老人의 生活에 普及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 對象者側으로는 權利로써 主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의 實施와 享受는 明確한 科學的 根據, 學問的 背景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精確한 合理性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老人福祉의 科學性을 提高시키는 學問이 바로 老年學(gerontology)인 것이다. 따라서 老年學의 발달없이는, 老人福祉의 科學化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3. 老人福祉의 機能

老人福祉는 社會福祉의 一分野이다. 그런데 社會福祉의 機能으로서 ① 豫防的 社會福祉 ② 保護的 社會福祉 ③ 開發的 社會福祉 ④ 調整的 社會福祉를 前提한다면 老人福祉의 機能으로서도 위와 같은 機能이 있게 된다.

즉 老人福祉에 ① 豫防的 機能 ② 保護的 機能 ③ 開發的 機能 ④ 調整的 機能이 있게 된다. 따라서 老人福祉의 서어비스 形態도 또한 ① 豫防的 老人福祉 ② 保護的 老人福祉 ③ 開發的 老人福祉 ④ 調整的 老人福祉로 分類할 수 있다.²¹⁾

위에서 老人福祉의 機能을 고찰하였거니와, 包括的인 老人福祉의 體系를 모색하는 前提는 ① 豫防 ② 保護 ③ 開發 ④ 調整이라는 네개의 機能에 의하여 一般的 老人政策의 缺陷을 補完하는 老人福祉라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前提에서 老人福祉 서어비스의 體系를, 老人의 社會生活上의 基本的 要求와 一般的 老人政策과의 關聯下에 다음 <表Ⅱ>와 같이 圖式化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²²⁾

Ⅲ. 老人福祉의 原則

무릇, 社會福祉成立의 理論的 根據, 즉 固有의 視角 乃至 原理는 社會福祉의 對象인 生活困難

21) 韓昌榮(1979), 前揭論文, pp. 147~150.

22) 上揭論文, pp. 148~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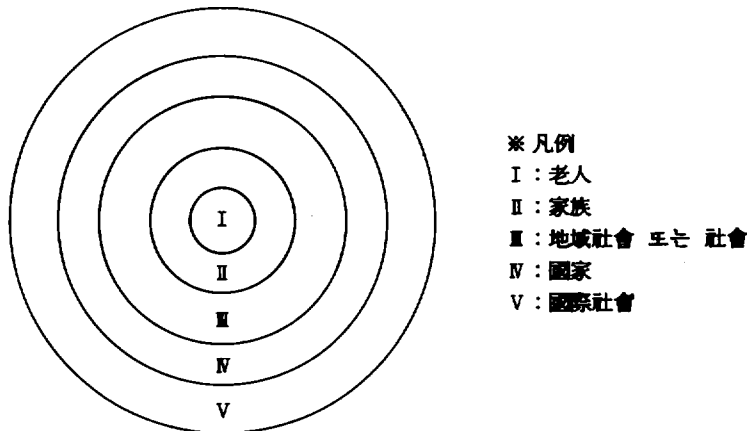
이 갖는 ① 社會性 ② 全體性 ③ 主體性 ④ 現實性이라는 本質에서 由來된다고 본다. 즉, 「社會性의 原理」에 의하여 社會福祉는 다른 專門分業制度和 같이 社會制度로서의 共通性이 주어지고 있지만, 社會福祉에는 ① 全體性 ② 主體性 ③ 現實性의 原理에 의하여 獨自인 社會制度로서 存在하는 理由가 있다. 다시 말하면, 全體性의 原理에 의하여 專門分業制度가 갖는 專門分化的 視角의 缺陷을 補完하고, 다음으로 主體性의 原理에 의하여 分業制度的 機關이 生活困難을 단지 客觀的으로 把握하는 것에 그쳐, 生活이 困難한 當事者의 立場에 서지 못한다는 限界 乃至 缺陷을 補完한다. 그리하여 最後로 現實性의 原理에 의하여, 生活困難에 對處하여야 할 專門分業制度가 制度 乃至 地域社會에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社會福祉는 적어도 一時的이라도 代替해서 對象者의 生活上의 現實的 要求에 相應하는 서어비스를 提供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다른 制度의 代用品으로서 制度의 缺陷을 補完하는 것이다.²³⁾

위에서 言及되어진 것은 社會福祉 一般에 관한 原理들이거니와, 이러한 原理는 老人福祉에도 적용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論文에서는, 위와 같은 原理를 前提하면서, 老人을 보는 諸次元(〈表Ⅲ〉, 참조)에 따라서, 各次元에서 강조되어야 할 原則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淸查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老人을 보는 諸次元을 크게 두가지로 兩分할 수 있을 것이다. 즉 老人에 “위한”(by) 原則과 老人을 “위한”(for) 原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老人에 의한 原則은 老人 스스로에게 관련된 原則이라 할 수 있으나, 老人을 위한 原則에는 家族, 地域社會 또는 社會, 國家 그리고 國際社會 등의 諸次元이 있는 것이다.

다음에, 老人에 의한 原則과 老人을 위한 原則들을 차례로 나누어 고찰한다.

〈表Ⅲ〉 老人을 보는 諸次元의 平面圖



23) 上掲論文, p. 147.

1. 老人에 의한 (by) 原則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社會福祉의 原理에 主體性的 原理이 있는 데, 바로 이 主體性的 原理로부터 老人에 의한 原則이 導出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老人에 의한 福祉(welfare by the aged)에 관한 原則이라 할 수 있다. 老人에 의한 原則으로서, 필자는 ① 自立性的 原則 ② 健全性的 原則 ③ 計劃性的 原則을 想定하여 보는 바,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연이어 老人에 의한 原則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老人에 의한 原則

1) 自立性的 原則

自立性的 原則이라 함은, 老人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해결하여 나아가는 原則이라 할 수 있다.

이 自立性的 原則은 美國老人文化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노인문화를 분석해 본다면, 한마디로 그 特性은 "獨立性"(independence)이라 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독립성의 源流는 미국의 強靱性(American Toughness)에 있다고 본다. 미국인은 어려서부터 강인하게 키워지고 있다.²⁵⁾ 이런 강인성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있다.²⁶⁾

그리고 미국노인의 獨立性은 이른바 核家族形態 發達過程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核家族은 都市化 또는 産業化 以後에 발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허나 미국노인의 獨立性은 그러한 도시화 또는 산업화를 기다리지 않고, 그 以前에 벌써 核家族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를 David Hackett Fischer는 잘 立證하고 있다.²⁷⁾ 그리고 老人의 獨立性을 Magaret Clark와 Barbara Gallatin Anderson은 證明하면서 다음과 같은 면접결과를 소개했다.²⁸⁾

"I hope to always be able to take care of myself and continue in good health."

"I'll tell you one thing-I'm not going to live in any of those rest homes and I'm not going to live with my daughters. I have a small income."

"I wouldn't want to get on welfare. I just wouldn't go to see them. I wouldn't want to do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s my parents did for me was that they gave me love and self-confidence: they taught me how to be independent and self-reliant."

24) 韓昌榮, 「美國老年學」, 제주, 新亞文化社, 1990, p. 39.

25) Rupert Wilkinson, *American Tough,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84, p. 118.*

26) *Ibid.*, p. 119.

27) David Hackett Fischer, *Growing Old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 23.*

28) Magaret Clark, Barbara Gallatin Anderson, *Culture and Aging,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s, 1967, p. 11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노인들은 어려서부터 강인하게 자라면서, 노후에도 獨立性을 保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우리의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너무 약하게 키우고 있는 것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²⁹⁾ 약하게 자라난 어린이가 늙어서 獨立性 또는 自立性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老後를 위해서라도 어린이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

우리 나라 老人의 自立性에 관하여 살펴볼 때, 지역적으로는 제주도지역 노인의 自立性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³⁰⁾ 이 점은 제주노인의 特質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노인의 가족형태는 아직까지 同居가 지배적인 유형으로 남아 있으나, 核家族化의 進進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³¹⁾

따라서, 老人의 自立性에 관한 원칙은 앞으로 점점 더 강조되어져 갈 것으로 전망된다.

2) 健全性의 原則

무릇, 健康이라고 하는 용어는 通俗的으로 肉體的인 건강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정신적 건강도 아울러 강조한다는 뜻에서 健全性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老人에 의한 原則에는 健全性이 필요하다. 身外無物이라 했다. 즉, 건강이외에는 다른 것이 無用之物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老後로 접어들어 갈수록 건강하여야 한다.

그런데, 東洋의 健康觀은 多分히 實際的, 科學的, 社會的이 못하고, 戒律的, 宗教的, 保身的, 家庭療法的 範疇를 넘어서지 못했던 점을 留意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²⁾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도 健全性의 原則을 具體化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健康觀에 대한 省察이 있어야 하며, 實際的, 科學的, 社會的인 健康觀으로 換骨奪胎하여야 한다.

사실, 健康의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는 법이 없다. 그래서 건강에 관하여서는 主要國의 憲法에도 규정되어 있으며³³⁾ 국제적으로 主要宣言 및 憲章 등에서도 闡明되어지고 있는 것이다.³⁴⁾

앞으로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여 갈수록, 健全性의 原則의 重要性 역시 점진적으로 증대하여 갈 것으로 전망된다.

3) 計劃性의 原則

計劃性의 原則이란, 老後를 對備하며 미리 設計(design for the future) 하는 원칙인 것이며 未來志向的인(future-oriented) 원칙인 것이다.

29) 한국일보, 1991.1.4. <23>, 어린이를 강하게 키우자. <1>; 너무 약하다.

30) 韓昌榮, 「濟州道老人論攷」, 제주, 韓一文化社, 1978, pp.181~184; 韓昌榮, 「濟州道老人의 特質論」, 「교육제주」 第50號, 제주도교육위원회, 1983년 pp.172~181; 韓昌榮, 「老人과 濟州道」, 「老人生活」, 제11집, 社團法人 大韓老人會, 1978년 pp.28~29. 참조.

31) 이가옥 外三人,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p.268.

32) 洪在郁, 「東洋에 있어서의 健康(衛生)觀考」, 「論文集」 제7집, 淸州教育大學, 1971, p.149.

33) 洪在郁, 「主要國 憲法의 健康에 關한 條文攷」, 「論文集」 제13집, 淸州教育大學, 1977, 참조.

34) 洪在郁, 「主要宣言 및 憲章의 健康에 關한 條文攷」, 「論文集」 제12집, 淸州教育大學, 1976, 참조.

둘이해보면, 우리 나라 노인들은 過去志向의(past-oriented)이거나 現在志向의(present-oriented)인 性向을 지녀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은 子女나 孫子女를 위하여 살아왔다. 과장된 표현을 빌린다면, 노인은 자녀를 위하여 애오라지 희생하였다. 따라서 노인은 자신의 老後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老後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까닭에 老後對策이 없게 된다. 이런 현상을 止揚하기 위해서 計劃性的의 原則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여 감에 따라서, 計劃性的의 原則 역시 그 重要性이 增加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老人에 의한 原則의 具體化

위에서 언급되어진, 노인에 의한 原則의 具體化는 노인 개개인에 따라서 千差萬別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千態萬象을 천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老人에 의한 原則과 聯關性이 있는, 노인들의 다짐을 알아보하고자 하는 바, 우선, 大韓老人會에서 마련한 “老人綱領”과, 다음으로 高守善女史의 “老人觀”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老人綱領”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老 人 綱 領

우리는 社會의 어른으로서 恒常 靑은이들에게 率先垂範하는 姿勢를 지니는 同時에 지난날 우리가 體驗한 高貴한 經驗業績 그리고 民族의 일을 後孫에게 斷承할 傳授者로서의 使命을 自覺하며 아래 事項의 實踐을 爲하여 다 함께 努力한다.

1. 우리는 家庭이나 社會에서 尊敬받는 老人이 되도록 努力한다.
2. 우리는 孝親敬老의 倫理觀과 傳統的 家族制度가 維持發展되도록 힘쓴다.
3. 우리는 靑少年을 善導하고 靑은世代에 奉仕하며 社會正義具現에 앞장선다.

다음으로, 大韓老人會濟州道支部長을 歷任했던 故 高守善 女史의 “老人觀”에 관한 遺稿는 다음과 같다.³⁵⁾

- ① 노인들은 웃어른으로서의 교양과 인격을 쌓아야함은 물론이고 예의범절 모두가 靑은이들에게 시범이 되어야 한다.
- ② 노인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③ 노인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거주장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 ④ 우리 노인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 그리고 민족정신을 현대 靑은이들에게 올바르게 계승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위에서 “老人綱領”과 “老人觀”을 살펴봤거니와, “老人綱領”에서는 <尊敬받는 老人>이 될 것을

35) 제주신문, 1989. 8. 12. <4>, 故 高守善여사 「노인관」 遺稿 남겨.

다짐하고 있으며, “老人觀”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말이 쉽지, <尊敬받는 老人>이 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老人은 加齡化(aging)되어 감에 따라서, 노인의 特性이 현저히 나타나게 마련이다.³⁶⁾ 따라서 老人에 의한 原則을 具體화하는 과정상, 制限性 또는 限界性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에 이른바 老人을 위한(for) 原則이 필요하게 되며 이런 原則을 다음에 천착키로 한다.

2. 老人을 위한(for) 原則

老人을 위한(for) 原則은 앞서 말한 社會福祉의 原理中, 社會性的 原理, 全體性的 原理 그리고 現實性的 原理와 聯關되어 있는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노인을 위한 福祉(welfare for the aged)와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老人을 위한 原則을 究明하는 데는, <表Ⅲ>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家族的 次元, 社會的 次元, 國家的 次元 그리고 國際的 次元으로 나누어 천착되어야 한다. 다음에 차례로 나누어 고찰한다.

가. 家族的 次元

老齡에의 到達은 家族의 마지막 發達過程上의 危機이다. 一般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家族構成員 사이에는 分離의 문제가 따른다. 또한 나이 많은 家族構成員은 必然적으로 職場, 健康, 有意味한 關係를 가진 사람 등을 喪失하게 되며 配偶者나 他人에 의해서 解決되어 오던 情緒的 慾求, 經濟的 도움과 身體的 保護 등을 子女에게 依存하여 해결하게 된다. E. Cumming과 W. E. Henry는 老年期에 일어나는 두가지 危險한 事件은 退職과 配偶者의 喪失이라고 指摘했다.³⁷⁾ 이런 점을 참작하면서, 필자는 家族的 次元上, ① 紐帶性的 原則 ② 敬老性的 原則 ③ 不遠不近의 原則을 想定해 본다. 다음에 이들 原則을 알아보고 그 具體化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家族的 次元의 原則

(가) 紐帶性的 原則

紐帶性的 原則이란, 家族構成員 사이에 맺어지는 끈끈한 紐帶(bond)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회가 근대가족에 기대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³⁸⁾

① 부부·친자·형제자매라는 세 방향의 감정융합적 인간관계를 유지·발전시켜 가족원의 정

36) 韓昌榮, “老人의 概念規定과 特性에 관한 研究”, 「論文集」第31輯, 제주대학교, 1990년 참조.

37) 金基兒, “家族危機介入에 관한 研究”, 李完永 鄭在瑛 教授 停年紀念論文集, 「法學研究」第23卷 第1號(通卷 第30號), 釜山大學校 法政大學 法學研究所, 1981년 p. 306.

38) 全準雨, 「家族福祉論」, 大邱, 弘益出版社, 1990, p. 32.

신적 안정의 장을 제공하는 일.

② 부부간의 애정에 기본을 둔 합법적인 성관계를 유지하고 자의 생식에 의하여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인구를 제공하는 일.

③ 친자관계를 매개로 하는 유아의 보호와 사회화.

④ 부부·친자간의 감정적융합관계를 매개로 하는 가계의 공동.

위에서 근대가족의 기능을 살펴봤거니와, ④번의 "감정적융합관계"는 늙은 가족구성원에게 소홀하기 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바로 紐帶性的의 原則을 提唱하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나) 敬老性的의 原則

敬老性的의 原則은 敬老思想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무릇, 傳統的의 孝倫理에 대한 現代人의 態도와 評價는 各己 다르다. 傳統的인 孝를 舊時代의 遺物로 단정하고 이를 全的으로 否定하는 視角이 있는가 하면, 한편 우리가 體驗하는 家族解體의 根本原因은 傳統的의 孝規範의 붕괴때문으로 보고 傳統的의 倫理規範의 회복이 危機克服의 前提條件이 되어야 한다는 見解도 있다.³⁹⁾ 필자는 後者의 見解에 同斷하거니와, 孝思想으로 始發된 敬老思想은 家族扶養模型에서 그 基盤(Boden)이 되어왔다는 점을 想到할 때, 敬老性的의 原則의 重要性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다) 不遠不近의 原則

不遠不近의 原則은 가족구성원의 住居形態 및 人間關係 등과 관련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가족형태로서의 核家族形態에서는 노인과 자녀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반대로 大家族形態에서는 노인과 자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노인과 자녀와의 空間이 너무나 먼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너무나 가까운 것도 문제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不遠不近의 原則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原則이 리얼하게 발휘되어지는 住居形態가 "밖거리模型"인 것이다.

40) 즉, "밖거리模型"의 住居形態에서는 空間上, "국이 식지 않는 거리"에서 生活하게 된다. 空間關係뿐만 아니라, 人間關係, 특히 姑婦間的의 관계에 있어서도 "밖거리模型"에서는 不遠不近의 原則이 잘 적용되어진다. 즉, 姑婦가 經濟單位로나 居住單位로 生活을 分離하면서도 한 울타리내의 안·밖거리에서 生活해 나가는 狀況은 큰 特徵 중의 하나로서 서로의 空間을 인정하면서 老後에도 子息家族과 情緒紐帶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友愛家族(companionate family)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울타리 넘어 따로 生活하더라도 自身의 生活은 스스로 解決하려는 意識이 強하여 子息에 對한 기대치가 약하므로 媳母가 느끼는 疏外感이 強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特性들은 앞으

39) 朴在侃, "傳統的의 孝思想과 그 現代의 意義", 경기, 韓國精神文化研究院, n.d., p.25.

40) 崔順男, 「現代社會와 老人福祉」, 서울, 弘益齋, 1989(재판), pp.272~273.

로 産業社會가 志向해 나가야될 民主家族의 理想型을 찾는 데 寄與하리라 여겨진다.⁴¹⁾

아무튼, 제주도의 “박거리模型”은 不遠不近의 原則을 발휘할 수 있는 paradigm인 동시에 가족 구성원간의 사랑의 틀(frame of love)을 창조적으로 考察해 낸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具體化

家族的 次元의 原則의 具體化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거니와, 우리 나라 固有의 美風 良俗이라는 視角에서는 이른바 “家訓”이라는 것이 있어 왔다.⁴²⁾ 이러한 家訓중에는 “忠孝”, “孝悌”, “孝” 등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⁴³⁾ 예컨대, “濟州韓氏家訓”은 忠孝, 德禮, 勤謹 그리고 恭儉이거니와, 필자는 이 가훈을 집의 가훈으로 삼고 있다.

요컨대, 家訓값기가 권장되어지는 한편, 그 家訓안에 孝 또는 敬老의 내용이 담겨지고 아울러 “박거리模型”의 住居形態가 보급되어진다면, 家族的 次元의 原則들이 보다더 具體化되어 갈 것이다.

나. 社會的 次元

〈表Ⅲ〉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家族的 次元의 外延에는 社會的 次元 또는 地域社會的 次元의 범주가 있다. 이 社會的 次元의 原則은, 社會福祉의 社會性的 原理와 現實性的 原理와 聯關性이 길다고 볼 수 있다. 이 社會的 次元의 原則으로는, ① 自然發生의 原則 ② 奉仕의 原則 ③ 組織化의 原則을 想定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들 原則과 그 具體化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社會的 次元의 原則

(가) 自然發生의 原則

무릇, 地域社會福祉는 官主導型보다는 自然發生型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바램을 原則化시킨 것이 바로 自然發生의 原則이랄 수 있다.

요컨대, 地域社會福祉란 生活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地域社會 속에서 도와주려는 社會福祉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예컨대, 老人의 community care는, 老人이 正常的인 地域社會關係를 維持하면서 生活할 수 있게 하며, 또한 家族의 看護負擔을 輕減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⁴⁵⁾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自發性을 本質로 하는 것이지, 強制性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41) 金惠淑, “濟州島 家族의 姑婦關係에 대한 研究”, 「論文集」 제17집(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1984, p. 141.

42) 金鍾權, 「名家의 家訓」, 서울, 家庭文庫社, 1977, 참조.

43) 韓昌榮(1979), 前掲論文, pp. 128~134.

44) 李春基, “地域社會福祉의 展開方法” 博士學位論文, 大邱大學校 大學院, 1988, p. 7.

45) 岡村重夫, 「地域福祉論」, 東京, 光生館, 1979(5版), p. 120.

(나) 奉仕의 原則

地域社會福祉의 生活化는 이른바 奉仕活動의 活性化에서 찾는 見解가 많다.⁴⁶⁾ 老人을 위한 奉仕活動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니와, ① 受容施設老人에 대한 奉仕活動과, ② 在家老人에 대한 奉仕活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으로 地域社會福祉에서 期待되어지는 것이 바로 在家老人에 대한 奉仕活動인 것이다. 이와 같은 活動이 福祉先進國들에서 가장 重要視되고 있거니와 그 制度를 家庭奉仕서비스(Homemaker Service)制度라 한다. 그리고 그 家庭奉仕서비스의 內容도 多樣하다.⁴⁷⁾ 그와 같이 多樣한 서비스 內容을 살펴볼 때, 투철한 奉仕精神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內容들이 많다. 따라서 奉仕의 原則이 提案되어지는 것이다.

(다) 組織化의 原則

위에서 老人을 위한 地域社會福祉의 原則으로서 奉仕의 原則을 提案하였거니와, 그와 같은 奉仕의 原則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個人的으로 이뤄지는 奉仕는 그 實効性이라는 점에서 限界性이 있게 마련이다. 個別的인 奉仕活動이 組織化되어질 때, 개별적인 봉사활동의 總和 이상의 效果性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 組織化의 原則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地方自治實施 以後, 이 組織化의 原則은 그 重要性이 倍增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地方化時代의 到來로, 老人을 위한 地域社會福祉活動의 전개가 기대되어질 것인데, 그러한 期待를 充足하는 活動은 바로 組織化된 奉仕活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具體化

社會的 次元의 原則이 具體化되고 있는 모습을 우선, 鄉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 鄉約 事行의 時點은 대체로 朝鮮朝 中葉의 中宗 年代로 意見이 모아지고 있거니와,⁴⁸⁾ 鄉約의 內容중에는 “患難相恤”이라는 綱目を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綱目は 오늘날의 이른바 “社會保障制度的 節目”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社會事業의인 特色”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⁴⁹⁾

아무튼, 鄉約의 地域社會運動 속에 內在해 있는 原理는 우리에게 많은 教訓과 參考를 제공해주고 있다.⁵⁰⁾ 뿐만 아니라 鄉約의 原理는 그 命脈이 어이겨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慶北, 永川郡에서는 마을마다 鄉約이 있다고 한다.⁵¹⁾ 또한 忠北에서는 이른바 「마을원로회」가 1990년 7월부터 구성되기 시작하여 同年 11월 현재로 95.4%인 3천6백69개 마을에서 2만3천4백56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회원으로 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⁵²⁾ 이와 같은 「마을원로회」의 發想

46) 韓昌榮, “地方自治와 老人福祉에 관한 考察”, 「社會發展研究」第6輯,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 1990. p. 83.

47) 한국여성개발원, 「家庭奉仕서비스制度에 관한 研究」, 서울, 창신사, 1989. p. 89.

48) 金命震, “우리나라 鄉約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1978. p. 17.

49) 上揭論文, p. 26.

50) 宋 權, 「地域社會開發概論」, 서울, 法典出版社, 1978. p. 321.

51) 조선일보, 1990. 11. 27. <12>, 마을마다 鄉約... “깨끗한 고장” 첫사업.

52) 조선일보, 1990. 11. 24. <17>, 忠北 「마을원로회」 큰 호응.

은, 老人에 의한(by) 奉仕를 誘導하는 것이지만, 老人에 의한 奉仕는 바로 老人을 위한(for) 奉仕를 誘發케 한다는 점에서 重要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非倫理的 行爲를 豫防하고 敬老孝親思想을 고취하면서 서로 신뢰하는 주민화 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88년부터 제주도가 마을鄉會 再現 시범마을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실시중이다.⁵³⁾ 연이어 제주도는 1991년도에는 「鄉會」 재현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키로 하고 있다.⁵⁴⁾

한편, 忠北大, 행정학과 李基柱 교수는 「한마음전화」를 설립하여 主導하고 있다고 한다.⁵⁵⁾ 李基柱 교수의 「한마음전화」의 事例는 바로 社會的 次元의 原則을 具體化시키고 있는 事例라 할 수 있다. 즉, 李基柱 교수의 「한마음전화」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自然發生的으로 이뤄진 것이며, 奉仕의 原則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으며, 그 奉仕를 組織화하여 이른바 組織化의 原則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마음전화」와 같은 奉仕活動이 여러 곳에서 전개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요컨대, 鄉約은, 老人을 위한 地域社會福祉面에서는 傳統의 源流라 할 수 있으며 實踐哲學이라 할 수 있으므로, 鄉約을 오늘에 再現시키는 일은, 地域社會福祉의 活性化를 위해서 매우 뜻있는 일이다.

덧붙여두거니와, 英國의 民間運動團體인 “The Age Concern”에서는 1983년에, 高齡者福祉政策의 具體的要求項目을 발표하고 있는 데, 그 큰 項目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所得保障, 2. 雇傭保障, 3. 住宅서비스, 4. 冬期生活援助서비스, 5. 住宅福祉서비스, 6. 醫療保健서비스, 7. 高齡者를 위한 交通서비스(公共交通機關), 8. 犯罪의 防止에 관하여, 9. 消費者로서의 高齡者 保護에 관하여, 10. 高齡者의 餘暇生活에 관하여, 11. 高齡者의 社會教育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된 큰 項目마다 基本原則을 천명하는 한편, 소한 小項目을 枚擧하고 있다.⁵⁶⁾ 이 要求項目들은 老人을 위한 地域社會福祉를 具體化하는데 있어서 他山之石으로 삼을만한 것으로 보인다.

다. 國家의 次元

〈表Ⅲ〉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國家的 次元은 社會的 次元과 國際的 次元의 中間에 그 位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的 次元의 視角에서는 國家的 次元은 社會的 次元을 包攝하고 있고, 國際的 次元의 視角에서는, 國際的 次元이 國家的 次元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社會福祉의 原理 중에서 全體性的 原理가 가장 리얼하게 적용되어지는 곳

53) 한라일보, 1991.1.10 <10>, 「마을鄉會」 재현운동 큰 성과.

54) 한라일보, 1991.1.31. <11>, 「鄉會」 재현 시범마을 5곳 지정 운영키로.

55) 조선일보, 1991.1.30. <15>, 사람들: 충북대 행정학과 李基柱 교수.

56) 松崎桑太郎, 「老人福祉論」, 東京, 光生館, 1986. pp. 181~197.

이, 바로 國家的次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國家的次元의 原則으로는, ① 全體性的 原則, ② 文化性的 原則, ③ 法制性的 原則을 想定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다음에 이들 原則들을 살펴보고, 연이어 그 具體化的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1) 國家的次元의 原則

(가) 全體性的 原則

무릇, 國家的次元의 原則은 國家의 全域에 걸쳐서 그 實効性이 있어야 한다. 國家的次元의 原則이 어느 特定地域에서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國家的次元의 原則은 全體性的 原則이라야 한다. 그런데, 全體性的 原則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屬人主義를 取하느냐 또는 屬地主義를 擇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屬地主義를 취할 때는, 우리나라의 領土內的 老人이 대상으로 될 것이지만, 屬人主義를 취할 때는, 外國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老人도 대상이 된다. 필자는 後者の 見解를 택한다. 예컨대, 在日僑胞중의 노인문제도, 看過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 文化性的 原則

文化를 넓은 의미로, 生活樣式(way of life) 또는 行動類型(pattern of behavior)이라고 볼 때, 나라마다 固有, 또는 特有的 文化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고유의 문화가 있으며 그 문화의 副次文化(subculture)로서의 老人文化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老人文化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原則이, 바로 文化性的 原則이라 할 수 있다.

外國에서 啓發되어진 老人福祉理論이나 프로그램 등이 우리나라 老人文化에 걸맞지 아니하면, 그 理論이나 프로그램은 價値가 없는 것이 된다. 이런 점을 뒷받침하는 接近方法으로서, 이른바, 土着化的 接近方法(contingency approach) 또는 狀況的 接近方法(situational approach)이 있다. 따라서 文化性的 原則은 이와 같은 接近方法과 밀접불가분의 關係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 法制性的 原則

위에서 언급된 全體性的 原則이나 文化性的 原則이 전국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國家的次元에서의 法制化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점을 容하는 原則이 法制性的 原則이라 할 수 있으며, 이 法制性的 原則은 法の支配(rule of law)의 原理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슬한 나라들이 老人福祉를 위한 法制化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⁵⁷⁾

2) 具體化

歴史的인 視角에서, 먼저 朝鮮朝의 經國大典의 法制化를 살펴보기 않을 수 없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外官職, 耆老所, 老人職, 宴享, 惠恤, 復戶 및 免役 등이 규정되어 있었거니와, 이와 같은 규정들은 大典會通에까지 繼承되었던 것이다.⁵⁸⁾ 이와 같은 脈絡이 오늘날의 憲法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7) 森 幹郎, 「政策視點の老年學」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83, pp. 21~34.

58) 韓昌榮(1979), 前掲論文, pp. 120~121.

憲法 제34조 제4항은 老人과 靑少年福祉向上을 규정하고 있으며⁵⁹⁾ 現行法律로는 老人福祉法이 制定되어 있다.⁶⁰⁾ 이 老人福祉法은 우리 나라의 法文化 및 老人文化를 投影照準하여 法制化된 法產出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老人福祉法 第2條는 同法의 基本理念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第2條(基本理念) ① 老人은 後孫의 養育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耆로서 尊敬받으며, 건전하고 安全된 生活을 보장받는다.

② 老人은 그 能力에 따라 適當한 일에 종사하고 社會的 活動에 參與할 機會를 보장받는다.

③ 老人은 老齡에 따르는 心身의 變化를 自覺하여 항상 心身의 健康을 유지하고, 그 知識과 經驗을 活用하여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 條文에서 제3항은 批判의 여지가 많다.⁶¹⁾ 그러나 1989년에 同法의 改正過程에서, 그 제3항이 改正되지 아니했던 것은 아쉬운 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法制化는 안된 것이지만, “敬老憲章”(1982年 5月 8日 宣布)에서는 老人福祉의 具現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개 項目을 규정하고 있다.

① 老人은 家庭에서 傳統의 美態을 살려 子孫의 극진한 奉양을 받아야 하며 地域社會와 國家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 老人은 衣食住에 있어 充足되고 安樂한 生活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③ 老人은 心身의 安定과 健康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④ 老人은 自身의 能力에 따라 社會活動에 參與할 수 있어야 한다.

⑤ 老人은 취미·오락을 비롯한 文化生活과 老後生活에 필요한 知識을 얻는 機會를 가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敬老憲章 以外에도,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老人福祉를 위한 諸原則들이 考案되어지고 있거니와, 여기서는 愼變重의 10大原則을 소개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⁶²⁾

- (1) 衣食住 등 基本的인 生活保障의 原則
- (2) 心身의 安定 및 健康維持와 醫療保障의 原則
- (3) 能力에 따른 再就業과 社會參加의 原則
- (4) 趣味와 娛樂 등 文化生活 享受의 原則

59) 金哲洙, 「憲法學概論」, 서울, 博英社, 1990(補訂重版), p. 489.

60) 上揭書, p. 491.

61) 韓昌榮, “老人福祉法의 制定과 改正에 관한 考察”, 「論文集」 제30집, 제주대학교, 1990, pp. 254~255.

62) 愼變重, “韓·日老人福祉政策의 比較研究”, 「社會科學論壇」第7卷 第1號(通卷 第12號), 釜山大學校 社會科學大學, 1986年 p. 104.

- (5) 老後生活選擇의 自由와 獨立·自存 및 在家保護의 原則
- (6) 급격한 社會變動에의 適應을 위한 새로운 知識獲得의 機會賦與의 原則
- (7) 老人扶養에 대한 家族, 地域社會, 公共團體, 企業 및 國家責任의 原則
- (8) 老後生活에 대한 自己責任과 自立自助의 原則
- (9) 老人福祉政策 樹立에 있어서의 現實성과 優先順位의 原則
- (10) 人間的 尊嚴에 相應하는 老後生活保障의 原則

요컨대, 上述한 敬老憲章이나 愼變重의 諸原則들이 法制化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 老人福祉法의 改正過程에서, 敬老憲章의 精神이나 諸原則들이 投入되어, 老人福祉法이 補完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 國際的 次元

〈表Ⅲ〉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國家的 次元의 外延에 있는 것이 國際的 次元이다. 이 國際的 次元에서 提案되어지는 原則으로는, ① 普遍性的의 原則, ② 人間尊嚴性的의 原則, ③ 人類愛의 原則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들 原則을 살펴보고 그 具體化를 고찰키로 한다.

1) 國際的 次元의 原則

(가) 普遍性的의 原則

國際的 次元의 原則은 어떤 特定 國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國際적으로 多數國家에 適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普遍성을 지녀야 한다. 이런 점을 提唱하는 原則이 普遍性的의 原則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세계 forum의 殿堂이라 할 수 있는 U.N.에서 採擇되어지는 老人權利宣言이나 決議 등은 普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 人間尊嚴性的의 原則

U.N. 憲章 第1條 ③項이나 世界人權宣言(1948) 第1條 등에서 人間尊嚴性的의 原則이 천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³⁾ 이렇게 해서, 人間尊嚴性的의 原則은 국제적으로 確立되어진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각국의 헌법에서도 人間尊嚴性的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다) 人類愛의 原則

위에서 언급되어진 人間尊嚴性的의 原則이 個人을 위한 原則이라고 한다면, 人類愛의 原則은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로 비롯하여 人類가 더불어 사는 슬기에 연관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世界人權宣言 第1條 後段에 “...서로 兄弟愛의 精神으로써 行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人類愛의 原則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2) 具體化

國際的 次元의 原則을 具體化하는 모습을 U.N.에서 찾아볼 수 있다. U.N.은 1948년 11월 26일, 총회에서 老人權利宣言을 의결했는데, 그 骨格은 다음과 같다.⁶⁴⁾

63) 金禎健, 「國際條約集」, 서울, 博英社, 1981, 참조.

64) 韓昌榮(1979), 前揭論文, pp. 275~277.

- (1) 扶助를 받을 權利(Right to assistance)
- (2) 住居에 대한 權利(Right to accommodation)
- (3) 食物에 대한 權利(Right to food)
- (4) 衣類에 대한 權利(Right to clothing)
- (5) 身體上 健康의 注意에 대한 權利(Right the care of physical health)
- (6) 精神上 健康의 注意에 대한 權利(Right to the care of moral health)
- (7) 娛樂에 대한 權利(Right to recreation)
- (8) 勞動에 대한 權利(Right to work)
- (9) 平穩에 대한 權利(Right of stability)
- (10) 尊敬에 대한 權利(Right to respect)

한편, U.N.은 1982年을 「世界노인의 해」로 정하였으며 Vienna에서 「世界總會」(1982년 7월 6일~8월 6일)를 개최하여 高齡者問題의 基本原則을 정하였으며 그 행동 프로그램(action program)의 目標을 정했는데, 그 目標은 다음과 같다.⁶⁵⁾

- To fur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for the processes of development of aging of the populations;
- To promo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the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issues related to aging;
- To propose and stimulate action-oriented policies and programs aimed at guaranteeing social and economic security for the elderly, as well a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m to contribute to, and share in the benefits of, development;
-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options consistent with national values and goals and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nciples with regard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needs of the elderly; and
-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to respond to the aging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to foster an international exchange of skills and knowledge in this area.

위에서 언급되어진, U.N.의 老人權利宣言이나 행동 프로그램의 目標 등을 미루어 볼 때, 이제는 國際的 次元에서도 老人問題는 關心之事로 그 位相이 定礎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U.N.의 次元에서 老人問題가 더 활발히 論議되어져서, 普遍性的 原則, 人間尊嚴性的 原則, 人類愛의 原則에 따라서,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불우한 노인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잘 사는 노인들 역시,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汎世界的인 奉仕活動을 전개하여야 할

65) 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Aging In All Nations*, A Special Report On The United Nations World Assembly on Aging, Vienna, Austria, July 26-August 6, 1982, p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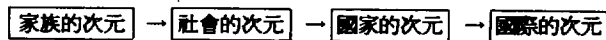
것이다.

3. 諸原則의 相互關係

위에서 諸原則을 크게 두 가지, 즉, 老人에 의한(by) 原則과 老人을 위한(for) 原則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原則도 따지고 보면, 각각 독자적으로 分離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函數關係가 있으며 相互補完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老人을 위한 諸原則은 家族的 次元, 社會的 次元, 國家的 次元 그리고 國際的 次元으로 나누어 살펴봤거니와, 各次元의 原則은 該當次元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原則들을 想定한 것이기 때문에, 各次元의 原則이 다른 차원의 原則을 排他的으로 排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發生論的으로 보면, 家族扶養模型이 먼저 발달하였으므로, 家族的 次元의 原則들이 먼저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社會的 次元, 國家的 次元 그리고 國際的 次元으로 擴大·發展하였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圖式化시켜 보면, 다음 <表Ⅳ>와 같다.

<表Ⅳ> 諸次元의 發展過程



<表Ⅳ>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諸次元의 源流는 家族的 次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家族的 次元의 原則들은 다른 次元의 原則들 보다도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金正輝는,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수칙을 <表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⁶⁶⁾

<表Ⅴ>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수칙

1. 노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고독감, 소외감인데 그것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부모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부모의 생신이나 다른 특별한 기념일을 기억할 것.
2. 점심이나 사교클럽 같은 모임에 부모님을 가끔씩 자주 모시고 나가고 부모님이 그들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사교적 집회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3. 가능한 한 부모님 집에 전화를 설치하고 자주 전화를 걸어 드릴 것.
4.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집안에 찬 기운이 가시도록 늘 보온(保溫) 장치를 잘 하고 특히 체온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보온에 신경쓸 것.

66) D. B. Bromley著 金正輝譯, 「老人心理學」, 서울, 星苑社, 1990, p. 410.

5. 부모님이 식욕을 잃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생활의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증세가 없는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그럴 경우에는 약물치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모시고 갈 것.
6. 노인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되도록 매일 외출을 하도록 하고 또 수족에 이상(異常)이 없나에 신경쓸 것.
7. 음식을 편식하지 않는가를 관찰하고 늘 찬장과 냉장고를 열어보고 식료품을 구입할 것.
8. 노인들은 대개 일곱 명 중 한 사람은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검안(檢眼)을 해서 도수에 맞는 안경을 마련해 드리고 방의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도서관에서 큰 글자로 쓰여진 책을 빌어다 드리고 청력(聽力) 검사를 해드려 성능 좋은 보청기를 맞춰 드릴 것.
9.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생존한 분은 그 슬픔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게 되며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는 자주 접촉해서 위로해 드리고 또 생존한 부모님이 집을 옮기는 일은 되도록 안하도록 할 것.
10. 부모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최대한의 효도라는 것을 깨달을 것.
11. 늘 용돈을 드리도록 하고 소일거리를 드려서 참여의식, 주인의식을 갖게 할 것.
12. 노인성 질환의 증상을 인식하고 그 예방·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
13. 부모님이 젊었을 때에는 자녀들을 부양하느라고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를 못하였다는 점을 자녀들이 인식할 것. 노인의 병 간호에 필요한 용구준비, 조력에 힘쓸 것.
14. 노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행하도록 할 것.
15. 효심(孝心)·효도·경로(敬老)의 자세는 가정에서부터 습득되도록 할 것.
 이러한 수칙을 마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 서구 선진국가에서 노인복지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성찰해 볼 때 물리적 복지와 심리적 복지를 병행하도록 하고, ② 노인을 괴롭히는 노인의 사고(四苦), 즉 경제적인 빈곤, 건강의 악화, 역할의 상실, 소외로 인한 고독감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家族的次元에서 敬老性의 原則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는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敬老性의 原則을 具體化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制約性이 있는 것이다. 그 하나의 制約性은, 核家族化現象으로 인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情을 모르고 자라는 어린이에게 “敬老”를 가르친다는 것이 짐스럽고 人爲의인 것이 되고 있다.⁶⁷⁾ 그 둘의 制約性은 姑婦關係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姑婦關係는 그 位相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⁶⁸⁾ 무릇 姑婦關係는 영원한 수수께끼라고도 하거나, 요즘 달라지고 있는 姑婦關係의 位相定立문제는 하나의 課題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課題를 풀어 나아가는 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박거리模型”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⁶⁹⁾ 따라서, “박거리模型”의 보급이 필요하다.

한편, 1982년이 「老人의 해」였는데, 1982년을 起點으로 해서 명실공히 老人問題는 國際的인 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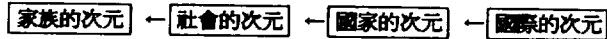
67) 敬老孝親教育編輯委員會, 「敬老孝親教育」, 서울, 교육주보社 출판부, 1989, p. 179.

68) 조선일보, 1990. 5. 5 <9>, 姑婦關係 달라지고 있다: 한국일보, 1990. 6. 7. <7>; 新中年世代 <19>: 姑婦關係.

69) 韓昌榮, 「濟州島의 天壽論」, 제주, 新亞文化社, 1990, p.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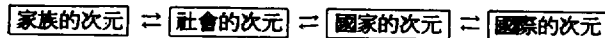
心之事로 定礎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脈絡에서 諸次元의 原則을 고찰하여 볼 때, <表Ⅳ>에서 보여주는 向方과는 달리, 오히려 그 反對의 현상을 想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圖式化시켜 보면, <表Ⅵ>과 같다.

<表Ⅵ> 諸次元의 feedback



그리고 <表Ⅳ>와 <表Ⅵ>을 結合시켜 圖式化시켜 보면, 다음의 <表Ⅶ>과 같은 圖式이 만들어 질 것이다.

<表Ⅶ> 諸次元의 發展過程과 feedback



요컨대, 어느 次元의 原則에 重點이 두어지느냐라는 문제는 一律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각국의 문화, 법제 등에 따라서 다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에 老人福祉法이 制定되기 以前까지에는, 家族的 次元의 原則이 강조되어 왔으며, 1981년 이후는 國家的 次元의 原則이 강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3월 실시예정인 地方自治가 실시되어, 地方化時代가 開幕되면, 그 때부터 社會的 次元의 原則이 강조되어질 전망이다. 理論적으로 말하면, 社會的 次元의 原則이 발달한 연후에 國家的 次元의 原則이 발전하는 것이 常道라 할 수 있으나, 우리의 現實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地方化時代에는 社會的 次元의 原則이 강조되므로, 地方自治下에서는 家族的 次元 및 國家的 次元의 原則에 이어, 社會的 次元의 原則이 조화롭게 발전하여 갈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家族的 次元, 社會的 次元 및 國家的 次元의 諸原則을 啓發한 然後에는 그 結果를 가지고서 國際的 次元의 原則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한편, 國際的 次元의 原則을 우리의 것으로 溶解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IV. 結 論

이 論文에서는 먼저 老人福祉의 概念을 考察하였으며, 다음으로는 諸次元에 있어서 老人福祉의 原則을 考案해 봤다.

먼저, 老人福祉의 概念은 좁은 의미의 概念과 넓은 의미의 概念으로 나누어 淸查하였는데, 최근의 傾向은 넓은 의미의 概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傾向을 규찰하였다. 이는 諸次元의 原則의

發展軌跡과도 그 脈絡이 相通하고 있는 것이다. 즉 家族的 次元에서의 老人福祉概念은 家族扶養 模型에 그 根底를 두고 있기 까닭에, 그 概念은 자연히, 좁은 의미의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家族的 次元으로 부터 社會的 次元 나아가서 國家的 次元으로 老人福祉가 擴大되어 갈 때, 그 概念 역시 넓은 의미로 換骨奪胎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하여 老人福祉의 概念이 國際的인 次元으로 普遍化되어간다면, 그 概念 역시 普遍性을 띠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老人福祉의 概念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한편, 概念을 規定하는 方法論上, 該當 概念을 靜態的으로 把持하느냐 또는 動態的으로 把握하느냐라는 두 가지 方法論이 있거니와, 필자는 概念을 動態的으로 파악하는 편에 서서, 老人福祉라는 概念을 動態적으로 파악하여, 하나의 過程(process)으로 봤다.

다음으로, 老人福祉上 諸次元의 原則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老人에 의한(by) 原則과 老人을 위한(for) 原則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두 가지 측면의 原則들이 調和롭게 발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設問調査에 의하면, “老後에 따로 산다”라든지 혹은 “홀로서기” 경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어서, 老人에 의한 原則이 장차 더 重要視되어갈 전망이다. 예컨대, 中央大 社會학과 金泳謨교수(54)가 지난 88년 대도시인 서울과 중도시인 濟州, 소도시인 安城邑 등 3곳의 1천7백92가구를 대상으로 가족크기관을 조사한 결과 소가족지지율이 57%, 대가족지지율은 31%, 어떤 가족 크기라도 좋다는 방임적 태도가 12%로 소가족선호경향이 높았다.⁷⁰⁾ 또한 삼성생명이 1990년 3월 전국의 주부 1천3백15명을 대상으로 「현대주부의 가정생활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노후에도 자녀 도움없이 따로 살겠다」는 응답이 64.1%에 이르러 자녀에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⁷¹⁾ 이와 같은 경향이 증가하면 할수록, 老人에 의한 原則은 그 重要性이 倍增되어갈 것이다.

또한, 老人을 위한 原則을 家族的 次元, 社會的 次元, 國家的 次元, 그리고 國際的 次元으로 나누어 천착하였거니와, 老人을 위한 原則의 始發은 家族的 次元에 있다는 論旨을 전개하였고 家族的 次元에서 敬老性의 原則은 老人扶養面에서 根幹인 동시에 敬老思想의 源流임을 살펴보면서 그 具體化는 家訓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천착하였다. 다음으로 社會的 次元에서의 原則은 地方化時代의 開幕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地自制가 실시되면, 社會的 次元의 原則이 具體化되어갈 전망이다. 다행히 우리 나라에는 과거로부터 鄉約이 傳承되고 있으므로, 그 鄉約을 基盤으로 하여 社會的 次元의 原則을 啓發할 수 있다고 본다. 연이어, 國家的 次元의 原則은, 不充分하기는 하지만 1981년에 制定되어진 老人福祉法에 具體化되어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老人福祉法은 老人福祉에 관한 限, 基本法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으며 單行法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예는 일본, 미국 그리고 자유중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國際

70) 한국일보, 1990. 5. 17. <7>, 新中年世代 <16>, 그들의 빛과 그림자, 老後의 독립.

71) 조선일보, 1990. 4. 11. <10>, 삼성생명 설문조사: 주부 64% “老後 따로 산다.”

的 次元의 原則은 「老人의 해」(1982년)에 보다 더 具體化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諸次元의 原則들은 相互 排他的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相互 補完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30년간이나 실시되지 못했던 地方自治制度가 시행되면, 社會的 次元 또는 地域社會的 次元의 原則이 實用化段階로 접어들게 되어갈 것이다. 문제는 長久한 歲月 동안에 地自制가 실시되지 못하였던 까닭에, 社會的 次元의 原則들이 活用되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즉, 如絶如縷하게 命脈을 유지해 왔던 社會的 次元의 原則들을, 地自制實施後, 되살려내는 일은, 老人地域福祉를 위하여 풀어 나아가야 할 課題인 것이다.

Summary

A Study on Concepts and Principles of Welfare for the Aged

Han Chang-young

There have been many concepts of welfare for the aged. In the past, concepts of welfare for the aged have been dealt with in a narrow sense. And at present, concepts of welfare for the aged have been debated in a broad sense. Therefore in time to come, concepts of welfare for the aged should have been adopted in a wide sense.

In addition, concepts of welfare for the aged should not be dealt with in a static approach, but in a dynamic approach.

In the meantime, principles of welfare for the aged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at is, principles by the aged and principles for the aged.

Firstly, principles by the aged consist of principle of independence, principle of health and principle of planning.

Secondly, principles for the aged have been dealt with in many aspects, that is, aspect of family, aspect of community, aspect of nation and aspect of international society.

In short, the local autonomy being enacted, it is necessary that principles for the aged in an aspect of community should be widely prevailed. Bu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ose principles related to community will be developed or not. To tell the truth, the local autonomy in Korea could not have been enacted during last 30 years, so that the local autonomy could not be developed. Nowadays the local autonomy lets it be well known to be enacted from 1991 on.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principles for the aged in an aspect of community be develop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ocal autonomy in Korea.